

#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고객용)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기업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외 은행이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법 및 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부 받으신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상품가입 정보

상품명	투자 위험등급	속려 제도	청약 철회권	중도환매	
				가능여부	비용발생
				(가능/불가)	(Y/N)

※ 중도환매 수수료 관련 세부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투자성향등급에 따라 상품별 최대 가입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은행)의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설정 3년 미만 : 투자자산 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 97.5% VaR 모형 기준)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97.5% VaR	
<b>1등급</b>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버리지펀드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펀드</li> <li>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50% 초과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b>2등급</b>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50% 이하	
<b>3등급</b> 다소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li> <li>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ELS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b>4등급</b> 보통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li> <li>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20% 이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b>5등급</b>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펀드</li> <li>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ELS등)에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10% 이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b>6등급</b>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금융집합투자기금(MMF)</li> <li>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li> </ul>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 97.5% VaR : 최대손실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하위 2.5/100 분위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을 연환산하여 산출  
 ※ 위험등급에 관한 세부 내용은 (1)투자자정보확인서 후면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사한 금융상품(예·적금)과 구별되는 특징

- 펀드(집합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3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조1호에서 정의하는 「예금성 상품」(예·적금)과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 비보장	수수료 발생가능	보수발생	해지 시 불이익 사항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본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취수수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실제 납입금액보다 상품 매입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품운용(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보수(비용)가 발생합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자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산가치 변동률을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게 운용

### 3. 민원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b>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b>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회사, 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 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입금거래 시 차감되어 투자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기관별 보수의 경우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시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b>Q2. 펀드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b>
펀드의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는 '과표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Q3. 재투자(결산)란 무엇인가요?</b>
대부분의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투자실적을 확정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으로 다시 분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 시 까지 유보 가능) 재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날 기준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세후 이익분배금 만큼 보유 좌수가 증가하므로 전체 평가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Q4. 퇴직연금 ETF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b>
퇴직연금 입금 (매수예정상품이 ETF인 경우) : 입금 익영업일 장중 분할 매매로 체결됩니다. 보유상품변경 거래 (상품 교체 매매의 경우) : 매도거래 시에는 장중 분할 매매 체결되며, 매수거래 시에는 매도상품이 결제 완료되는 시점(현금성자산 편입)에 따라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장중 분할 매매로 체결됩니다(15시 기준). ETF 장중매매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 가능) : 장중 실시간 가격으로 당일 체결 됩니다(09:00~15:00). 별도의 거래수수료는 없으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기관별 운용보수는 투자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됩니다. ※계약 해지 시 익영업일(T+1일) 장중분할 매매가로 체결됩니다.

### 4.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안내

구 분	내 용
<b>숙려제도</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간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숙려기간 중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규취소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종료 후 2영업일간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SMS) 응답을 통해 투자 승낙하신 경우에 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입거절 또는 가입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투자금은 원리금 지급계좌로 자동 반환)
<b>청약철회권</b>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신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을 통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투자금은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자동 반환 됩니다.
<b>위법계약 해지권</b>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수수료(위약금 등) 부과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b>자료열람 요구권</b>	투자자는 당행의 「자료열람요구권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료열람요구 접수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은 보관기간 내 열람 가능하며,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보관하고 일부 자료의 경우 5년 보관합니다.
<b>계약해지 방법</b>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장마감 시간 내 해지 가능하며, 실제 지급받는 환매대금은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로 정해진 환매수수료 징수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참조
<b>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b>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직원] 설명의무 이행확인

-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를 통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 \_\_\_\_\_ (서명/인)